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목 차

- I. 서 론
- II.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황 및 성과
- III. 우주관련 조약상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제책임
- IV. 우주관련 주요국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
- V.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 VI. 결 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8771).

**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I. 서론

우리나라는 1992년 8월에 최초로 소형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외국에서 발사한 이후 과학기술위성, 통신방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등의 인공위성이 외국에서 발사되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어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었으며,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¹⁾ 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1단은 러시아가 제작한 액체연료 로켓을, 2단은 우리기술로 제작한 고체연료 로켓을 조합하여 만들었다. 우리정부는 나로호 후속사업으로 순수 우리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3단형 액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여 2020년에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사업 후속단계로 달 탐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²⁾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UN)의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약에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1)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이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를 일컫는 말이다.

2)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정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http://www.msip.go.kr>, 2013. 11. 26.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에서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발사국의 연대책임,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발사국의 손해배상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 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우주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에서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기능 수행으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국가항공우주국의 권한, 우주선의 발사, 운용 또는 회수와 관련하여 국가항공우주국이 수행한 활동으로 일어나는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배상을 위해 우주선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의 부보권한 및 우주선 이용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우주활동법에서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 입법에 따라 우주활동의 수행 중에 사고의 결과로서 입은 직접손해에 대한 전부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의 안전보장, 우주활동의 보험, 우주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에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수탁발사에 관한 계약을 발사 위탁자와 간에 체결하는 경우에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수탁발사에 의하여 수탁발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공위성 발사관련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우리나라 위성체 및 발사체의 개발에 부응하여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상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제책임,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관련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관련 법, 제도 및 정책 면에서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금년 1월에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성공으로 스페이스 클럽 반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국제책임과 정부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위상을 정립하고 우주개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고,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상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제책임 그리고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우주관련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고찰 한 후,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우주개발 관련 국내법제,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 우주환경 보전정책,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김선이(2007)의 연구³⁾에서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상의 주요내용, 손해배상보험 및 각국의 우주사고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영진(2009)의 연구⁴⁾에서 환경오염과 우주조약, 책임협약과 환경오염문제, 기타의 국제조약과 환경보호, 우주폐기물의 규제와 환경의 보호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조홍제 외 1인(2012)의 연구⁵⁾에서 우주손해 관련 국제조약, 우주손해와 관련된 문제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3)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pp.3-23.

4)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6, pp.153-194.

5) 조홍제·신동준,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6, pp.103-122.

II.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황 및 성과

1. 위성체 개발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주요 개발 현황 및 성과를 보면, ① 과학기술위성으로 우리별 1호를 1992년 발사, 우리별 2호를 1994년 발사, 우리별 3호를 1999년 발사, 과학기술위성 1호를 2003년 발사, 과학기술위성 2호를 2009년 및 2010년 발사, 과학기술위성 3호를 2013년 발사, 나로과학위성을 2013년 발사하였으며, 차세대 소형위성을 2016년 발사예정으로 개발 중이다.

② 다목적실용위성으로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1999년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2006년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3호를 2012년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5호를 2013년 발사하였으며, 다목적실용위성 3A를 2014년 발사예정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를 2019년 발사예정으로 개발 중이다.

③ 정지궤도위성으로 천리안을 2010년 발사하였으며, 정지궤도 복합위성 2A를 2017년 발사예정으로, 정지궤도복합위성 2B를 2018년 발사예정으로 개발 중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 및 정지궤도 위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리랑위성은 세계수준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 탑재체 및 정지궤도 위성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⁶⁾

2. 발사체 개발

우리나라 우주 발사시스템의 주요 개발 현황 및 성과를 보면, ① 과학로켓으로 KSR1호를 1993년 발사, KSR2호를 1998년 발사, KSR3호를 2002년 발사하였으며, ②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2009년 8월 1차 발사, 나로호를 2010년 6월 2차 발사, 나로호를 2013년 1월 3차 발사하였으며,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 중이다. ③ 우주 발사장 나로

6)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및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 공청회 발표자료」, 2013. 7. 31, pp.9-10.

우주센터를 2009년 준공하여 소형위성 발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7년 실용위성 발사시설 확장 계획으로 개발 중이다.

나로호는 100kg급 저궤도 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로서 개발 사업기간은 2002년-2012년으로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으로 1단(액체)은 러시아 후르니체프, 2단(고체)은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하여 2009년 1차 발사 실패, 2010년 2차 발사 실패,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2009년 8월 나로호 1차 발사 실패는 이륙 후 216초경 한쌍의 페어링(위성보호덮개) 중 한쪽 페어링의 미분리가 발생하여 무게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로 비행궤적의 이탈 및 위성궤도 진입속도 부족으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나로호 2차 발사 실패는 이륙 후 137.19초(고도 67km, 지상거리 40km)까지는 정상적으로 비행하였으나, 이후 통신두절이 발생하였으며, 낙하지점은 제주남단 방향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약 412km 떨어진 공해상으로 추정된다.⁷⁾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원인을 둘러싸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개발 러시아 회사인 후르니체프 간에 논쟁이 있었으며, 양측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우리 측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지상실험증거를 제시하였으나, 후르니체프 측은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지상과 고공은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결국 결렬되었다.⁸⁾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우주발사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 및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과학로켓 및 나로호 개발을 통해 우주 발사체 기반 기술을 획득 및 우주 발사장(나로우주센터)을 확보하고 있다. 비록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였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존재하고 있다.⁹⁾

7) 황진영, “나로호 발사 성공과 향후 발전방향”, 『2013년도 제5회 국제항공우주정책·법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5. 3, pp.76-78.

8) 조선일보 토요섹션, 2013. 3. 30-31, B2면.

9) 미래창조과학부, 전계 공청회 발표자료, p.9.

Ⅲ. 우주관련 조약상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제책임

1. 우주조약상 발사국의 국제책임

(1)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주체가 행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¹⁰⁾ 제6조에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을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국제적 책임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2년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이 채택되었다.

위와 같이 우주조약 제6조에서 국가는 우주에서 그 자신 및 그의 국민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며, 비정부주체의 활동은 관계국가에 의해 적당하게 인증되고 계속적인 감독을 받으며, 또한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그 국제기구 및 우주조약의 당사국들이 부담한다.¹¹⁾

여기서 국제기구란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일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닌 기구에 의한 우주활동의 경우는 관련국가의 허가와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도 관련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¹²⁾

10) 우주조약의 정식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통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1966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67년 10월 10일 발효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당사국은 10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7년 10월 13일 공포·발효되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우주조약 및 주요국 관련법령』, 2009. 1, pp.3-15;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4판, 교보문고 Pubple, 2013, pp.58-60.

11) Francis Lyall and Paul B. Larsen, *Space Law A Treatis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p.83.

정부 간 국제기구가 조약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1968년 구조협정 제6조, 1972년 책임협약 제22조, 1976년 등록협약 제7조 및 1979년 달 협정 제16조에 따라 국제기구가 이들 협정 및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수락 선언”¹³⁾을 하는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 다만 국제기구의 회원국 다수가 우주조약과 해당 협정 및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한다.¹⁴⁾

우주조약에서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은 마치 그들이 각각 국가 자신의 활동인 것처럼 취급되며,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책임부담의 법적 결과를 용인하게 된다. 우주조약 제6조의 “국가 활동”의 용어의 의미를 오직 한 국가 또는 그의 국민들에 의해 의도된 활동으로 해석하여 국가 영역내의 외국인 등에 의한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88년에 개정된 1984년 미국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은 예를 들면, 미국시민들의 발사대의 운영을 포함하는 발사활동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여하한 자가 그것을 미국의 주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특히 미국의 국적이나 등록 하에 있는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이 어떤 국가의 영역 관할권 밖에 있고, 그러므로 국적국가의 유일한 운영 관할권(또는 더욱 정확하게 실제 관할권)내에 있는 때에 이러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에 의한 또는 이들에 탑승한 자들에 의하여 행해진 활동은 배제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어느 장소이든지간에 모든 당사국 자신에 의하여 행해진 발사를 포함하는 우주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들의 영역, 준영역 및 인적 관할권을 포함하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행해진 그것들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⁵⁾

우주조약 제6조는 우주에서의 비정부주체의 활동을 인증과 감독에 복잡하게 할 의무를 관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로써 모든 비정부주체의 발사는 인증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그들에 대한 책임에 관계되는 모든 국가들에 의해 인증되고 감독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히 여러 국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문제는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12)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11, p.180.

13) 유럽우주청(ESA)과 유럽기상위성개발기구(EUMESAT)는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및 1975년 등록협약에 대한 수락선언을 하였으며, 유럽통신위성기구(EUTELSAT)는 1972년 책임협약만을 수락 선언하였다: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129.

14)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129.

15) Bin Cheng,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ton Press Oxford, 2004, pp.607-608.

인증을 부여하고 감독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동의에 의해 그들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소정의 발사나 우주활동에 관계될 수 있으나, 그들이 요구된 인증과 감독의 통제를 행사할 관계 국가로서 그들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히 1976년 등록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발사에 관계된 2개 또는 그 이상 국가들이 그들 중 하나가 등록국가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¹⁶⁾

우주조약 제6조는 우주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는 일반원칙과 더불어 비정부주체 즉 사적인 주체가 행한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는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적인 주체의 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바, 이는 국제책임에 있어서 사적인 주체의 우주활동도 국가의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는 사기업이 우주조약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국제적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¹⁷⁾

(2)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

우주조약 제7조에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대기권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조약 제6조의 국가의 국제적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발사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의 발생 장소는 지상, 대기권,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이며, 지상에 있어서의 손해는 사람 및 재산에 관한 손해를 의미하며, 대기권에 있어서의 손해는 주로 통상의 항공기에 대한 손해를 의미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16) Bin Cheng, *op.cit.*, pp.609-610.

17)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p.98.

다른 조약당사국의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 우주물체의 상승, 비행, 강하, 착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우주조약 제7조의 주된 적용대상이 된다.¹⁸⁾

이 조항은 어떤 우주물체의 발사에 관해서 동시에 4개 체약국 즉 ①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국가, ② 발사를 구매하는 국가, ③ 영역으로부터 물체가 발사되는 국가, ④ 시설로부터 물체가 발사되는 국가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리고 우주물체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과실 책임을 의미 하는가 또는 무과실 책임을 의미하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¹⁹⁾

(3) 우주물체 등록국의 관할권, 통제권 및 소유권

우주조약 제8조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물체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아울러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어 동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주조약상의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76년 “등록협약”(Regislation Convention)이 채택되었다.

우주조약 제8조는 우주에 발사된 물체와 그들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을 등록국에 귀속시키고 있다. 1976년 등록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등록과 제4조 제1항에서 국제연합(UN)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조약 제8조에 의하면 관할권과 통제권은 국가등록에 의존하며 국제연합 등록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²⁰⁾

우주물체의 소유권은 우주에 발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한 국가나 다른

18)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99.

19) Bin Cheng, *op.cit.*, p.613.

20) Bin Cheng, *op.cit.*, p.625.

주체가 우주물체의 폐기에 의해 우주물체 관련 의무 자체를 벗을 수 있다는 암시는 없다, 따라서 우주물체를 포기함으로써 책임이 중단되거나 관련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²¹⁾

2. 구조협정상 발사국의 국제책임

(1) 체약국에서 발견된 조난 우주선원의 인도

1968년 구조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²²⁾ 제4조는 우주선원이 사고, 조난, 비상 또는 불의의 착륙으로 인하여,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 착륙하거나,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동 우주선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주조약 제5조 전단은 우주인이 사고나 조난의 경우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이나 공해상에 비상 착륙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들의 등록국에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체약국에서 발견된 우주물체의 통보, 회수, 반환 및 유해 위험성 제거

구조협정 제8조 제1항에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내의 지구상,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어떤 장소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여사한 사실을 발견한 체약국은 발사당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이 발견된 영역 상에 관할권을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또한 발사당국의 요청을

21) Francis Layall and Paul B. Larsen, *op.cit.*, p.84.

22) 구조협정의 정식명칭은 “우주비행사의 구조, 송환 및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이며, 1967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동년 12월 3일 발효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당사국은 9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9년 4월 4일 공포·발효되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17-26;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60-61.

받은 경우에는 동 당국으로 부터의 원조를 받아 동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발사당국의 영역 한계 외에서 발견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동 구성부분품은 발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발사당국의 대표에게 반환되거나 또는 동 대표의 처분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사당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반환되기 전에 그 물체가 동일 물체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4항에서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체약국이 기타 장소에서 회수한 대기권에 발사된 물체 및 그 구성부분품이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동 체약국은 여사한 사실을 발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또한 발사당국은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유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조약 제8조 후단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조약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며 동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여기서 발사당국은 구조협정 제6조에서 발사에 대하여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17-26;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60-61.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관계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정의되고 있다. 발사당국은 통보를 받은 경우에 위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 체약국의 지시와 통제 하에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는데, 구조협정은 가능한 보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구조협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결함중의 하나는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귀환으로 발생하는 경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 인류의 사절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귀환과는 달리 우주물체의 발견 및 귀환에 관련되는 경비는 발사당국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²⁴⁾

23) Bin Cheng, *op. cit.*, p.626.

24) 문준조·김선이, 「현대 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pp.126-127.

3. 책임협약상 발사국의 국제책임

(1) 우주물체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및 과실책임

1972년 책임협약(Liability Convention)²⁵⁾ 제2조는 자국의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 중에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이 우주물체의 발사국에 절대적인 책임(absolute liability)을 과하고 있는 것은 우주활동이 고도의 위험을 내포하는 초 위험적 행위로서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우주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는 발사국이 당해 활동에 관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책임주의”의 사고로부터 나온 것이다.²⁶⁾

이 조항에서 절대적 책임의 적용범위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구표면”이란 육지, 바다, 지하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비행중인 항공기”란 공중에 배치된 모든 인공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주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주활동을 하는 국가는 뒤따르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²⁷⁾

절대적 책임은 과실의 증명이 필요없는 책임으로서 손해와 우주물체 간에 인과관계만 증명되면 절대적 책임이 인정되며, 발사국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손해가 지구 표면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국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협약 제6조에 의해 절대적 책임이 면제된다.²⁸⁾

절대책임제도에 의하면 국가는 여하한 상황 하에서 불가항력의 경우조차도 책임을 져야한다.²⁹⁾ 한편 동 협약 제6조 제1항에서 본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으로 하여 발사국 측의 절대책임의 면제는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청구국 또는

25) 책임협약의 정식명칭은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이며, 1971년 11월 2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2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당사국은 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14일 공포·발효되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27-45;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61-64.

26) 홍순길·신홍균·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p.279.

27) 조홍제·신동춘, 전계 논문, p108.

28)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125.

29) I.H.Ph. Diederiks-Verschoor and V. Kapal,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37.

청구국을 대표하는 자연인 및 법인 측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특히 유엔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면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7조에서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발사국의 국민에 대한 손해, 그리고 발사시 또는 발사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 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 제3조는 지구 표면 이외에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물체의 발사 후 지구표면 이외의 지역 즉 대기권이나 우주공간 또는 천체에서 우주물체 상호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우주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간의 관계로서 전술한 발사국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 경우와는 달리 위험부담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사국에 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다.³⁰⁾

발사국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발사국이 회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위성을 방치하거나, ② 정지궤도에서 요구되는 위성 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③ 비활동 위성을 처분궤도에 배치하지 않거나, ④ 우주쓰레기의 발생을 완화시키지 않거나, ⑤ 우주활동으로 발생하는 우주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³¹⁾

(2) 우주물체 충돌에 의한 제3국의 손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

책임협약은 다른 국가에 속하는 2개 우주물체의 충돌에 의해 제3국에 손해가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동 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30)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105.

31) H.A. Baker, "Liability for Damage Caused in Outer Space by Space Refuse", *Annals of Air and Space Law*, Vol.12, 1988, p.183-192; 공군법무실, 전게서, p.124.

1개 발사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제3국 또는 제3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기 2개의 국가는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3국에 대하여 아래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즉 (a) 제3국의 지상에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에 대한 전기 양국의 책임은 절대적이다. (b) 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제3국의 우주물체 또는 동 우주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국에 대한 전기 2개국의 책임은 2개국 중 어느 하나의 과실 혹은 2개국 중 어느 하나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공동 및 개별 책임의 모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 부담은 이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전기 2개국 사이에 분할된다. 만일 이들 국가의 과실 한계가 설정될 수 없을 경우, 보상 부담은 이들 간에 균등히 분할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발사국들의 하나 또는 전부로부터 이 협약에 의거 당연히 완전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주물체 공동발사국의 책임

책임협약 제5조 제1항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에는 그들은 발사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바 있는 발사국은 공동발사의 타 참가국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한다. 아울러 공동 발사 참가국들은 그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재정적인 의무의 할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정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할 발사국 중의 하나 또는 전부로부터 이 협약에 의거 완전한 보상을 받으려하는 손해를 입은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우주물체가 발사된 영역 또는 시설의 소속국은 공동 발사의 참가국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사국 이외에 예컨대 발사에 대해 기술이나 과학과 그 밖의 제공을 간접적으로 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도의 책임이 지워진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배상청구는 이러한 국가에 대해서는 행해지지 않고 발사국에 집중한다.³²⁾

32)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110.

(4)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민 또는 외국인의 손해에 대한 적용배제

책임협약은 우주물체의 운영에 참가하는 발사국의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협약 제7조에서 이 협약의 규정은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아래에 대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a) 발사국의 국민, (b) 발사시 또는 발사시 이후 어느 시기로부터 하강할 때까지의 단계에서 그 우주물체의 작동에 참여하는 동안, 또는 발사국의 초청을 받아 발사 또는 회수 예정지역의 인접지에 있는 동안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피해국의 발사국에 대한 손해보상청구 및 기한

책임협약 제8조 제1항에서 손해를 입은 국가 또는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손해를 입은 국가는 발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타 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동일지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구제를 인정해 주려는 의도에서 국적국 이외에 손해발생지역의 국가와 영주민의 거주 국가에게도 보충적으로 배상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³³⁾

책임협약 제9조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사국에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당해 발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제3국에 대하여 발사국에 청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국과 발사국이 공히 국제연합의 회원국일 경우, 청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 하나의 손해보상청구만이 행해졌는데, Cosmos 954 사고가 그것이다. Cosmos 954 사고의 개요를 보면, 1977년 9월 18일에 소련연방에 의해 발사된 Cosmos 954호는 해상에 선박을 추적하는 레이더 감시위성이었다. 작동 고장의 결과로서

33)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112.

Cosmos 954호는 1978년 1월 24일에 캐나다 북서부 영토에 추락하였는데, Great Slave 호수 북부 124,000 평방킬로미터 위에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많은 양의 폐기물이 흩뿌려졌으며, 그리고 Alberta와 Saskatchewan 북부에 흩뜨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소련 연방에게 위성의 구성과 가능한 유해요소에 대해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요청은 회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성으로부터 쓰레기의 발견을 통보하였다. 1979년 1월 23일에 캐나다 정부는 소련연방에게 1979년 3월 15일 위성 추락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6,041,174.70 캐나다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지지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캐나다의 손해배상청구는 책임협약과 일반 국제법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소련연방은 책임을 부인하였고 문제는 1981년에 해결되었다.³⁴⁾

책임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발사국에 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만일 손해의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전기 사실을 알았던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청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태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날로부터 1년을 어느 경우에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시한은 손해의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구국은 청구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시한의 만료 이후라도 손해의 전체가 밝혀진 이후 1년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손해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와의 관계

책임협약 제11조 제1항에서 이 협약에 의거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시는 청구국 또는 청구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어떠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이 협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그 국가가 대표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사국의 범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34) "Canada-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Protocol and Settlement of Canada's Claim for Damages Caused by Cosmos 954, Moscow, April 2 1981": (1981) 20 ILM 689 ; (2005) XXX Part II. AASL 261-3 : Francis Lyall and Paul B. Larson, *op.cit.*, p.117.

국가는 청구가 발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기관에 제기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국가를 기속하고 있는 타 국제협정에 의거 제기되어 있는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의거 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피해자가 국제적 청구를 하기 전에 가해국가의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7) 발사국에 의한 원상회복 상태로의 손해보상

책임협약 제12조는 발사국이 이 협약에 의거 책임지고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대로 자연인, 법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입은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발사국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원상회복의 정신에 의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배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8년 1월 발생한 구소련의 Cosmos 954호가 캐나다 영토에 추락한 사건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총 6,041,174.70 캐나다 달러이며, 이 금액은 동 위성이 캐나다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야기되지 않았을 상태의 회복에 준한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와 구소련은 3년간의 교섭을 거쳐 1981년 4월 Cosmos 954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캐나다의 배상청구 해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여 구소련은 3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고 캐나다는 이를 수락하여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³⁶⁾

(8) 배상청구위원회 설치, 구성 및 결정

책임협약 제14조는 청구국이 청구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발사국에게 통고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보상 청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청구위원회를 설치한다

35)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113.

36)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VIII, No. 4, July 1979, May 1981: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p.112, 115, 116.

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 제15조 제1항에서 청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는 바, 청구국과 발사국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의장이 되는 제3의 1인은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각 당사국은 청구위원회 설치요구 2개월 이내에 각기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위원회 설치요구 4개월 이내에 의장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개월의 추천 기간 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 제18조에서 청구위원회는 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타당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배상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청구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³⁷⁾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최종적이며 기속력이 있다. 만일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최종적이며 권고적인 판정을 내리되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그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위원회가 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위원회 설치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4항에서 위원회는 그의 결정 또는 판정을 공포한다. 또한 위원회 결정 또는 판정의 인증등본을 각 당사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정부 간 국제기구의 손해보상책임과 국가의 지불책임

책임협약 제22조 제3항에서 어느 정부 간 국제기구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기구와 이 협약의 당사국인 동기구의 회원국인 국가는 (a)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기구에 맨 처음 제기된 경우, (b) 기구가 6개월 이내에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의 또는 결정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한해서 청구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에 대하여 전기 금액의 지불책임을 요구할 경우,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책임협약 제12조에 의하면, 발사국의 이 협약에 의거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상태로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국제법 및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등록협약상 발사국의 국제책임

(1) 발사국의 우주물체 등록 및 통보

1976년 등록협약(Regislation Convention)³⁸⁾ 제2조 제1항에서 우주물체가 지구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발사국의 우주물체 등록 결정

등록협약 제2조 제2항에서 이러한 여하한 우주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8조의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물체 및 동 승무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결되고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동 물체의 등록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우주물체는 A국가에 등록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증을 행하는 국가 및 형법, 보건규정, 안전규정,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탑승에 적용할 법률은 B국가의 그것들이 될 수 있다. 발사국들은 그들 중 어느 국가가 우주물체를 등록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 중 어느 국가가 그것에 대한 통제를 행할 것인가는 반드시 동일한 국가일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면 1988년 미국, 유럽우주기관(European Space Agency)의 회원국들, 일본, 캐나다는 상설 유인 민간 우주정거장에 관한 협정은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유럽우주기관의 파트너의 하나에 각각 등록된 몇 개의 부문 즉 구성부분들을 가진 우주정거장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38) 등록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unched into Outer Space)이며,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9월 15일 발효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당사국은 6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15일 공포·발효되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47-57;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64-65.

협정 제5조 제2항은 우주조약 제8조 및 등록협약 제2조에 의거 각 파트너는 위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구성부분들 및 그의 국민이 우주정거장의 승무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5. 달 협정상 발사국의 국제책임

(1) 달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 환경의 보전조치

1979년 달 협정(Moon Agreement)⁴⁰⁾ 제7조 제1항에서 체결국들은 달의 탐사 및 이용을 함에 있어 달의 환경에 대하여 약화시키게 하거나 또는 환경외의 물질을 가지고 옴으로서 달의 유해한 오염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것을 묻지 않고 달의 환경의 기존균형의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된다. 아울러 체결국들은 또한 지구외의 물질을 가져오거나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지구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체결국들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본조 제1항에 따라 취하여야진 조치를 통보함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사전에 달에 대한 모든 방사선물질의 설치 및 설치의 목적지에 관하여 통보하여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체결국들은 다른 체결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특별한 과학적 관심을 가지는 달의 구역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제연합기관과 협의하고 특별한 보호조치를 합의되어야만 된다. 또한 국제적인 과학적 보존지역으로서 지정되어야만 되는 고려를 다 하여야만 되고 다른 체결국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도 이 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달 위의 우주물체 및 요원에 대한 관할권 및 관리권

달 협정 제12조 제1항에서 체결국은 달 위에서 자국의 요원, 우주차량, 장비, 시설물, 기지 및 설비에 대한 관할권 및 관리권을 보유한다. 한편 우주차량, 장비, 시설물, 기지 및 설비의 소유권은 그것들이 달 위에 존재하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39) Bin Cheng, *op. cit.*, pp.628-630.

40) 달 협정의 정식명칭은 “당 기타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협약”(Agreement Governing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이며, 1979년 12월 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4년 7월 11일 발효되었다. 2013년 1월 현재 당사국은 15개국이며,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47-57;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65-67.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체약국들의 요원 등에 대한 그들의 달 위에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달 협정은 달 위에 존재가 요원, 기지 및 설비 등의 관할권 상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을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달 위에 그들이 도착하거나 설치되기 이전에 가졌던 소유권 상태를 그대로 보유한다.⁴¹⁾

(3) 달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

달 협정 제14조 제1항에서 본 협정의 당사국은 달에서 국가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본 협정에서 규정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들의 관할권 하에 있는 비정부주체가 적절한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 감독 하에 달에서 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우주관련 주요국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

1. 한국 우주 관련법상 정부의 책임

(1) 우주개발진흥법상 정부의 책임

1) 정부의 우주관련 조약 준수 및 우주개발시책 수립 책무

우주개발진흥법⁴²⁾ 제3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Bin Cheng, *op.cit.*, p.630.

42)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 5월 31일 제정·공포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우주물체를 예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1.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4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5항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에 책임 국가를 판별하는 기본적 기준은 그 우주물체의 국적이므로 국적부여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⁴³⁾

우주개발진흥법 제9조 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3) 신홍균,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5. 12., p.284.

3)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및 취소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제1항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1. 대한민국 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탑재 체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1. 우주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 부담능력, 4. 그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발사에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 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 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호의 결격사유⁴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대표가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대표를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제도는 발사에 대한 국가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 약 및 책임협약 등 국제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발사행위는 고위

44) 우주개발진흥법 제12조에서 우주물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는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자산자 2. 파 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이다.

험과 고비용, 국가의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⁵⁾

4)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에서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우주조약 및 책임협약상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당사자이나, 대내적으로는 우주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사고발생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⁴⁶⁾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 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우주물체의 반환

우주개발진흥법 제22조에서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45) 신흥균, 전계 논문, p.286.

46) 신흥균, 전계 논문, p.287.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23조에서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해당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우주조약과 구조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재확인 한 것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하여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우주물체의 반환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⁴⁷⁾

(2) 우주손해배상법상 정부의 책임

1) 정부의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한 구상 및 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

우주손해배상법⁴⁸⁾ 제3조 제1항에서 정부는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주 사고로 인하여 타 국가의 재산 및 인명의 손해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 국민이나 재산상의 피해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동일하게 배제하도록 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⁴⁹⁾

2) 우주물체 발사자의 무과실 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 제1항에서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 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전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47) 공군법무실, 전게서, p.77.

48) 우주손해배상법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9) 공군법무실, 전게서, p.129.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우주사고의 특수성 즉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⁵⁰⁾

3)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에서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6조 제1항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상을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탑재체인 인공위성이 궤도를 비행하는 과정에는 손해발생의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탑재체 관리자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¹⁾

4) 정부의 피해자 구조, 피해 확대방지 및 지원 조치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 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50) 공군법무실, 전게서, p.128.

51) 김선이, 전계 논문, p.11.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3항에서 정부가 전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한

우주손해배상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은 책임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손해의 발생일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이 확인한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 또는 책임져야 할 발사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일자 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기산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⁵²⁾

2. 미국 우주 관련법상 정부의 책임

(1) 국가항공우주법상 정부의 책임

미국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⁵³⁾ 제3표제(잡칙)에서 보험 및 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308조(a)에서 국가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은 우주비행체(space vehicle)의 발사, 운영 또는 귀환에 관련하여 행한 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그리고 한도까지 우주비행체의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을 제공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국가항공우주국에 이용 가능한 예산은 그러한 보험을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52) 김선이, 전계 논문, p.12.

53) 1958년 제정된 미국 국가항공우주법은 우주활동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가항공우주국(NASA)의 설치에 관한 근거법이며, 총 제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계서, pp.220-287.

그러나 그러한 예산은 이 법률 제203조(c)에 의해 제정된 상환정책상 이용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상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b)에서 국가항공우주국장이 책임보험의 이용 가능성, 비용 및 조건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는 바와 같은 이 조항에 일치하는 그러한 규정들에 의하여 국가항공우주국과 이용자 간에 협정은 우주비행체의 발사, 운영 또는 귀환에 관련하여 행한 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합의의 합리적 비용을 포함하는)에 대하여, 그러나 오직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용자의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않는 한도까지 미국이 이용자를 배상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상은 이용자의 실제 태만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로부터 일어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c)에서 배상을 규정하는 (b)항에 의해 작성된 협정은 또한 (1)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이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미국에 통지, 그리고 (2) 미국의 선정으로 미국에 의한 그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방어에서 통제 또는 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d)에서 국가항공우주국장이나 그의 피지명인이 그 금액이 적정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b)항에 의한 지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f)에서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우주비행체”는 우주왕복선 및 관련 장비·장치, 구성부분 및 부품과 함께 우주운송체제의 다른 구성부분을 포함하는 우주에서 발사 시도된, 발사된 또는 조립된 물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업우주발사법상 정부의 책임

미국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 1988년 개정)⁵⁴⁾은 사적 참가자들과 정부 간에 그리고 사적 당사자들 간에 위험의 배분과 책임의 할당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3당사자에 대한 위험은 3단계로 구성되는 수평적 기준으로 사적 발사 제공자와 정부 간에 배분된다. 이들 각 단계에서 정부 또는 발사자들이 위험을 부담한다.

제1단계에서 발사운영자는 미화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대 추정손실까지

54) 1984년 제정된 미국 상업우주발사법은 상업 우주 발사면허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288-345.

또는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 책임보험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보험을 조달하는 대신에 운영자는 재정적 책임, 즉 자체보험 또는 다른 위험관리 대안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단계는 정부배상으로 되는데 정부는 제1단계를 초과하는 미화 15억 달러까지 모든 성공적인 손해배상청구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부는 상업우주발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적 부문 발사산업과 공동 부담하고 있다. 제3단계는 정부배상의 상한 즉 규정된 제3자 책임보험금액 이상이며, 발사제공자의 배타적 책임을 구성하는 미화 15억 달러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다. 미화 15억 달러 이상의 위험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극히 있을 것 같지 않다.⁵⁵⁾

미국법전(USC) 제701장 (상업 우주 발사 활동) 제70112조(a)에서 책임보험과 재정적 책임요건의 일반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발사 또는 재진입 면허가 이 장에 따라서 발급되거나 이전되었을 때, 면허권자나 이전을 받은 자는 다음에 의한 청구의 최대 가능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에 달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 즉 이 (A) 면허에 따라 수행된 행위로부터 발생한 제3자의 사망, 신체상해 혹은 재산상 손해나 손실, 그리고 (B) 이 면허에 따라 수행된 행위로부터 발생한 사인에 의한 정부자산에 대한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한 미합중국 정부의 청구이다. (2) 교통부장관은 항공우주국장,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다른 관련 책임기관의 자와 의논하여 본 조의 제(1)항 (A)목 및 (B)목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결정한다. 또한 일 회의 발사 내지 재진입에 관련된 총 청구액에 관하여 면허권자나 이전을 받은 자는 다음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보일 필요는 없다. 즉 (i) 본 조의 제(1)항 (A)목에 따라 500,000,000 달러. (ii) 본 조의 제(1)항 (B)목에 따라 100,000,000 달러. (B) 총액이 본 조의 (A)목 (i)이나 (ii)에서 적용 가능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세계시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책임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70113조(a)에서 책임보험 및 재정책임 요건을 초과하는 청구에 대한 지불의 일반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1) 관련 법률에서 미리 규정한 범주까지 또는 추가 입법권한에 의해 본 조의 (d)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에서 청구 지불을 제공하도록 입법된 범위까지 교통부장관은 제3자가 면허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사망, 신체부상 혹은 자산 손상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발부되

55) Julian Hermida, *Legal Basis for a National Space Legisl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pp.81-89.

거나 이전된 면허에 따라 수행된 행동에 대한 청구(합리적인 소송 및 중재비용 포함)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의한 지불을 제공한다. 이러한 청구는 이 장에 따른 면허권자, 면허를 이전받은 자, 면허권자 내지 이전을 받은 자의 계약자, 하청업자 혹은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계약자 또는 하청업자에 대한 것이며, 우주비행 참가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구는 본 조에 따라 일회 발사 내지 재진입이 다음과 같은 경우, 유효한 청구총액의 범위까지만 지불될 수 있다. 즉 이 편의 제70112조 제(a)항 (1)호 (A)목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이나 재정책임 증명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해당보험이나 재정책임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1,500,000,000 달러(그리고 1989년 1월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추가금액을 더하여)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러시아 우주 관련법상 정부의 책임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Space Activity of 1993)⁵⁶⁾은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재배당에 관하여 몇 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관련된 우주기술의 운영에 대해 기구단체이든지 국민이든지 책임있는 자에게 재배당 된다. 책임조건은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손해가 우주기술의 창조 및 이용시 범한 잘못의 결과인 경우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에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일부 또는 전부 책임있는 단체 또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주를 제외한 러시아 영역 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러시아 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근거는 객관적이다. 즉 과실에 불구하고 발생한다. 손해를 일으키는 우주기술을 창조하고 이용한 책임있는 단체 또는 국민의 책임은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보험금액이나 보험보상금액으로 제한된다.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책임은 여전히 러시아연방 법률에 그렇게 명시된 경우에 그들의 재산에 대한 구상청구를 통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우주기술을 창조하거나 이용한 책임있는 단체나 국민의 책임일 수 있으며 또는 법률상 의무를 지는 보증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 의해 부담될

56) 1993년 제정된 우주활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은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규칙을 제공하고 러시아 연방의 사회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및 국방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과학 및 산업의 잠재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며,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158-202.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관하여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서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해진 직접손해에 대한 전부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⁵⁷⁾

러시아 우주활동법 제25조에서는 우주활동보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에서 우주기술을 활용하거나 그에 대한 주문에 의해 과학적 및 국가 경제적 목적의 우주기술 창조·이용이 이루어지는 단체와 국민은 러시아연방 법률로 정하는 금액범위 만큼 의무 보험을 든다. 의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재산손해는 물론 우주비행사 그리고 지상설비 및 그밖의 우주기반설비물에 있는 인원의 생명과 건강상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보험 보험료는 러시아 우주기금 또는 우주활동 보험을 위한 면허를 취득한 그 밖의 보험회사에게 이전되며,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국민과 맺은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우주활동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동 조 제2항에서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들과 시민들은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우주기술의 보험을 자발적으로 부보할 수 있다.

러시아 우주활동법 제30조에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에서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해진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보장한다. 동 조 제2항에서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해진 손해에 대한 보상은 관련 우주기술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단체와 국민이 지불한다. 그러한 손해가 우주기술의 창조 및 이용 시 범한 실수의 결과인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단체와 국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부담한다. 동 조 제3항에서 러시아연방의 영역 내에서 혹은 외기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할권 밖에서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해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지구 표면으로 부터 떨어진 어느 장소에서든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나 그 물체에 탑재된 재산에 대해 다른 우주물체에 의해 손해가 가해진 경우, 단체와 국민의 책임은 그들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비율에 따라서 발생한다. 러시아연방의 우주물체에 의해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몇몇 단체와 국민에게 속하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그러한 모든 단체와 국민에 대해서 또는 그 중 어느 단체나 국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손해를 보상한 단체나 국민은 이에 상응하는 단체·국민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이들의 책임은 그

57) Julian Hermida, *op. cit.*, pp.105-106.

잘못 정도에 따라 할당하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등하게 할당된다. 우주활동 수행중 사고로 인해 가해진 손해에 대하여 우주기술 창조와 이용에 참여한 단체와 국민이 지는 책임은 우주기술과 우주활동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보험금액 또는 보험보상금으로 한정된다. 보험금액 또는 보험보상금이 우주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해진 손해를 보상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러시아연방 법률에 명시된 방식으로 관련 단체나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

4. 일본 우주 관련법상 정부의 책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 관한 법률⁵⁸⁾ 제21조 제1항에서 일본우주기구에 의해 발사된 모든 인공위성들은 제3자 책임보험에 부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보험의 목적은 잠재적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우주기구로 하여금 발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은 보험금액이 피해자의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적절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주무대신이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험자의 인수 가능한 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은 일본기구가 달리 그의 고객과 공동으로 책임질 때에 이용자의 고의에 의하여 일어나는 손해를 제외하고, 발사에 의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제3자 책임의 전부를 정부 우주기구가 부담하도록 인가하고 있다.⁵⁹⁾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제21조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에서 기구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기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위성을 발사하지 아니한다. 동 조 제2항에서 전 항에서 규정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액수는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적절하도록 관계장관이 보험자가 지불 승인할 수 있을 만한 금액과 기타 관련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동 조 제3항에서 위탁의 결과로 기구가 위성의 발사를 수행하도록 되는 경우(이하 “위탁된 발사”),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은 적용되는 규정 조문과

58)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된 “국가우주개발기구(NASDA)에 관한 법률”을 2004년 개정하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명칭, 목적, 활동 및 제반사항의 범위를 수립하기 위한 법률이며,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418-443.

59) Julian Hermida, *op.cit.*, pp.151-152.

관계없이, 해당발사를 위탁한 사인 혹은 실체,(이하“위탁자”)에 의해 기구를 위해 혹은 기구를 대신하여 체결될 수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제22조는 위탁된 발사에 관한 특별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에서 위탁된 발사에 관하여 기구가 위탁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구는 관계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사인이나 실체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기구의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1. 위탁된 발사가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사인이나 실체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기구가 책임을 지고, 위탁된 발사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을 때 기구는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해당 당사자들의 손해에 대한 전체 보상책임을 진다. 2. 전 호의 경우에 그러한 손해가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당사자 누구의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기구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보상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동 조 제2항에서 전 항에 있어서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당사자”는 위탁자와 기구가 지명한 사인이나 실체 혹은, 전술한 특별협정에서 위탁된 발사에 관련된 사인이나 실체인 위탁자를 의미한다. 동 조 제3항에서 기구가 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특별협정을 체결할 때, 전 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전 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보험계약은 기구를 위해 그리고 기구를 대신하여 위탁자에 의해 체결된다.

V.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1.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국내법제의 정비

(1)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 및 정비

일본 우주기본법⁶⁰⁾ 제11조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

60) 2008년 제정된 일본 우주기본법은 일본의 우주개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우주개발에 대해 기

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부는 우주활동에 관한 규제 및 기타 우주개발에 관한 조약과 기타의 국제약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제의 정비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2항에서 전항의 법제 정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의 증진 및 민간의 우주개발 추진에 기여하도록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일본 우주기본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우주개발에 관한 정부정책 및 우주활동에 관한 규제와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약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제상, 재정상, 세제상 또는 금융상 조치 등을 정부가 강구할 것과 법제의 종합적·계획적 정비를 정부가 신속히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유엔 COPUOS의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사항에 따른 법제 정비

유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⁶¹⁾ 법률소위원회는 2009년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련된 국내입법에 대한 정보의 일반적 교류”라는 의제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립하였으며, 작업반은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2012년 제51차 법률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동 보고서는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7가지를 제시하였다.⁶²⁾

① 적용 범위 : 국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우주활동의 범위는 우주물체의 발사, 발사 및 재진입 시설 운용, 우주물체의 운용과 추적, 우주선의 설계와 제조, 우주 과학과 기술의 활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국의 영토에서 수행되는 우주활동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자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 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이념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이며, 총 35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게서, pp.404-417.

61) 유엔은 1959년 제14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61년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현재 회원국은 74개국이다: 이준, “UN COPUOS 논의동향 및 전망”, 『2013년도 제51회 항공우주정책·법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2. 6, p.70.

62) UN Doc. A/AC.105/C.2/2012/CRP.9/Rev.2, 26 Mar. 2012 :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123-124.

② 허가 : 우주활동은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허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허가 요건은 UN 우주 관련조약과 관련 국제문서상 국가의 국제의무 및 약속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보 및 외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안전 : 허가의 요건은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또는 환경 손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 및 기술적 기준으로 COPUOS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과 같은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비정부기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 현장 심사 또는 일반적인 보고 체계 등 허가받은 우주활동의 지속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등록 : UN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있는 국가기관은 우주물체 국내 등록부를 갖추어야 한다. ⑥ 손해배상과 보험 : 국가가 국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⑦ 궤도상 우주물체의 소유권 이전 및 통제 : 궤도상 우주물체의 소유권 이전 및 통제 등 우주물체의 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내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4월 제52차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검토를 위해 다음 8가지 사항으로 구성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에 대한 권고 수정안이 제출되었다.⁶³⁾ ① 우주활동의 범위, ② 발사국으로서 국가의 의무 및 우주에서 국가활동에 대한 책임, ③ 관계국가당국에 의한 우주활동의 허가, ④ 유엔 우주조약상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 허가조건, ⑤ 허가된 우주활동의 감독과 모니터링, ⑥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국내등록, ⑦ 우주물체 운용자나 소유자로부터 구상, ⑧ 비정부기관의 우주활동의 지속적 감독 등이다.

위와 같은 COPUOS 법률소위원회 보고서의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 입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비추어,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 새로이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COPUOS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과 같은 우주쓰레기 경감조치, ② 궤도상 우주물체의 소유권 이전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63) UN Doc.A/AC.105/C, 2/L.289: <http://www.oosa.unvienna.org>

2.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

(1) 우주물체의 공동 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1972년 책임협약 제5조에서는 2개 이상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에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이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동 발사에 참가한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⁶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위탁발사의 경우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손해보상 책임에 관하여 위탁발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한 사인이나 실체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책임을 지되, 손해가 위탁발사 관련 당사자의 의도적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손해에 대해 지불한 비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우주물체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는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다음과 같은 미국 상업우주발사법상의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의 1984년 제정 상업우주발사법(1988년 개정)에 따라 발사를 하는 개인은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업우주발사법은 손해 발생시 이를 자체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제3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 최대 예상손실을 보험액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제3자 책임은 5억 달러, 미국 정부 재산손해는 10억 달러까지로 하되 보험시장에서

64) 이영진 외 2인, 전계 연구보고서, p.180.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한이 5억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적용되는 보험 상한액은 제3자 손해 책임의 경우 264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발사 허가를 받은 개인 사업자가 고의 적인 과실을 하지 않는 한 개인의 발사와 관련한 손해 발생시 15억 달러까지의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 금액에서 개인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5억 달러 이지만 실제로는 264백만 달러가 상한)을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손해와 관련하여서만 상한을 적용할 수 있는바, 국제적 책임일 경우에는 1972년 책임협약에 따라 무제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만 15억 달러 이상의 배상액은 개인 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자 손해배상액이 개인 배상 상한을 초과할 경우 미국정부는 의회 승인을 거쳐 약 25억 달러까지 배상한다. 또한 미국은 발사에 참여하는 위성 소유주, 발사업체, 발사체 제조업체 및 동 부품 제조업체 등 모든 기관이 상호 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발사에 관여한 모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⁶⁵⁾

3.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

(1) 우주개발 이용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 강구

일본 우주기본법 제7조에서 우주개발 이용은 우주개발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20조에서 국가는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우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휴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일본 우주기본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우주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해 볼 때, 우주개발 이용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할 것,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한 국가정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제휴에 국가가 노력할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67년 우주조약 제9조는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기본적 규정으로서, 본 조약의 당사국은 유해한 오염을 회피하고 또한 지구권대 외적 물질의 도입으로부터 야기되는 지구

65)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294-295.

주변에 불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탐색을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공간의 유해한 오염방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우주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달과 기타 천체가 보존하고 있는 원시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우주공간은 로켓의 배기가스, 인공 위성의 선실 등에서 누설되는 수증기, 기능을 상실한 로켓, 기체에서 떨어진 미세한 파편 등으로부터 오염되며 또 천체는 지구상에서 발생한 세균과 원자력의 방사능에 의해서도 쉽게 오염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⁶⁶⁾

달 협정도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환경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달 협정 제7조 제1항에서 달을 탐색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당사국은 달 환경에 불리한 변화의 야기, 환경외적 물질의 도입을 통한 달의 유해한 오염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를 불문하고, 달 환경의 기존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또한 지구외적 물질의 도입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지구 환경이 유해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외 물질”이란 자연환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사성 또는 화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지구주변의 저궤도 또는 정지궤도를 포함하여 우주공간에서 돌고 있는 수많은 우주쓰레기 가운데에는 지구표면으로 낙하 되는 것들도 적지 않아 이로 인하여 계속 인적 또는 물적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문제로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⁷⁾

(2)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 채택

인공위성의 파편뿐만 아니라 운용을 종료한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해당 궤도에 발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우주발사체에서 비롯된 파편 등과 같이 대기권에 진입하여 연소되지 않고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쓰레기는 인공위성의 안전한 운용 등 우주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규범적 노력이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66) 이영진, 전계 논문, pp.158-159.

67) 이영진, 전계논문, pp.165-166.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유엔 COPUOS가 2006년에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우주쓰레기 경감조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단기적인 조치로써 의도적인 파괴를 자제하는 것이며, 둘째는 장기적인 조치로써 운용 중인 위성, 우주탐사선 등의 주변지역에서 임무를 종료한 우주비행체 및 발사체의 최상단을 제거하는 것이다.⁶⁸⁾

국내적으로 미국은 국가항공우주국(NASA)뿐만 아니라 교통부(DOT), 연방통신위원회(FCC) 등도 우주쓰레기 경감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NASA는 1995년 처음으로 궤도 쓰레기의 경감 절차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NASA 안전표준”을 발표하였고, 2007년 이를 개선하여 “NASA 표준”을 채택하였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2004년 “궤도쓰레기 경감규칙”을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2009년 1월 러시아연방 기술계량청이 “우주쓰레기 경감에 대한 우주비행체와 발사체 단의 일반적 요건”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2003년 “우주쓰레기 경감 표준”을 채택하였다.⁶⁹⁾

우주쓰레기 문제는 우주 내지 지구상의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주내지 지구를 개발 이용하는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또는 지역 블록별로 상호 협력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야만 된다. 자체 우주발사시설을 갖추고 본격 우주탐사와 이용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주선진국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쓰레기의 감소, 나아가 우주환경보호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⁷⁰⁾

우리정부의 우주환경보전 정책으로 우주환경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우주환경감시 인프라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여 우주물체 추락대비 등 국가 우주위험 관리체계의 구축, 우주물체 추락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우주물체 충돌 정밀시스템의 구축 등을 실행하여 지구주변의 우주환경 및 국가 우주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⁷¹⁾

68) 박원화·정영진, 전계서, pp.276, 279.

69) 박원화·정영진, 전계서, pp.281-285.

70) 이영진, 전계논문, pp.185-186.

71) 미래창조과학부, 전계 공청회 발표자료, p.21.

4.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1)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 준수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국가에게 국제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우주조약 제1조 후단에서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용이하게 하고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 제3조에서는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활동을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개발도상국 필요를 고려한 국제협력선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선언 제1항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와 이용에서 국제협력은 UN헌장 그리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를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영역이어야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필요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 선언 제3항에서 모든 국가 특히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위한 관련 우주 역량과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기초에 따라 국제협력의 촉진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선진 우주역량을 가진 국가와 수행된 그러한 국제협력에서 파생되는 초기 우주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⁷²⁾

(2) 우주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개발 역량 확보 및 우주선진국 진입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제협력은 러시아와의 나로호의 개발 협력을 들 수 있다.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되며 고체 추진체인 2단은 우리나라의 기술로, 액체 추진체인 1단은 러시아와 협력으로 개발되었다. 러시아와의 발사체 개발 협력은

72) 박원화·정영진, 전게서, pp.131-132.

기술 협력 이외에도 우주분야에서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라는 국제법 제도에 대한 준수도 함께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에 앞서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제도인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에 가입하였으며, MTCR 가입 후 나로호 개발 협력을 위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하여 우주기술 협력협정과 우주기술 보호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⁷³⁾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우주조약으로는, 2004년 9월 21일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우주개발 기술협력협정)”, 2006년 12월 17일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2006년 12월 18일 “대한민국정부와 우크라이나정부 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⁷⁴⁾

항공우주분야는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요구되는 첨단기술 분야로써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 항공우주기관과의 지속적인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사업과 유엔 COPUOS, 국제우주연맹(IAF) 등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주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등 17개국과 기술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⁷⁵⁾

우주개발 국제협력 강화의 목표는 우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독자 우주개발 역량 확보 및 국가위상 제고이며, 목표 달성 방안으로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다. 즉 첫째, 국제협력을 통한 한국형 달 탐사, 한국형 발사체 등 국가우주개발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미국(NASA)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을 통한 한국형 달 탐사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발사체 선진국과의 협력선 다변화 및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둘째, 우주과학 기초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 확대를 통한 우주과학 연구역량 강화 및 우주과학 탑재체 관련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선진국과의 과학임무 위성 등 우주자산 교차활용을 통한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우주분야 국제기구, 국제규범 참여를 통한 우주활동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기후변화, 재난 관리 등

73) 박원화·정영진, 전계서, pp.147-148.

74) 외교통상부 조약국, 전계서, pp.80-135

7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kari.re.kr>, 2013. 11. 30.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 외기권 활동 행동규범 등 국제규범 성안 참여를 통한 국익을 보호 한다. 넷째, 우주국제협력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통제본부(Control Tower), 범부처 협의체 설치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신설한다.⁷⁶⁾

VI. 결 론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3차의 발사시도 끝에 2013년 1월 30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목표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의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의 위성인 나로과학위성을 우리의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였으며, 또한 세계 11번째 우주독립국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개발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기술 자립 및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후속 한국형 발사체 독자개발의 기술과 경험을 확보하는데 우수한 성과가 있었다. 나로호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경험은 국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우주발사체 독자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이라는 목표선상에서 후속 추진중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로켓이 될 한국형 발사체 발사시점을 당초 2021년 9월 발사 계획보다 1년 3개월 앞당겨진 2020년 6월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첫 달 궤도선과 착륙선도 같은 년도에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형 발사체는 무게 1.5톤의 실용위성을 지상 600 내지 800킬로미터에 발사하여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로켓으로서 수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다섯 번 발사되며, 한국형 발사체는 추력이 75톤인 액체연료 엔진이 기본이다. 2017년 12월에 엔진 성능 확인 차 75톤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로켓을 시험 발사하며, 이어서 2019년 12월에 맨 아래 1단 로켓은 75톤 엔진 4개, 2단은 1개, 3단은 7톤 액체엔진을 장착한

76) 미래창조과학부, 전계 공청회 발표자료, pp.24-25.

3단형 우주로켓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다.⁷⁷⁾

1967년 우주조약 및 1972년 책임협약에 의하면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우주물체에 의해서만 아니라 우주에서 국가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원칙 때문에 발생한 손해와 또한 비정부주체에 의하여 우주에 발사된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우주물체상의 우주선을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하는 어떠한 국가의 국민들, 운영하는 국가의 국민들, 그리고 발사되는 우주물체의 시설을 소유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우주물체가 발사되는 영역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주물체나 그의 구성 부분에 의해 국가들이나 그들의 국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국들에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정부주체들이 떠맡은 어떠한 우주활동에 있어서 여러 국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책임에 비추어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허가 및 통제에 대비함에 있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국제협정상 국가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국가를 면책할 의무를 그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주활동과 관련되는 규제와 그 외의 우주개발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증진, 민간영역에서의 우주개발의 추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국은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국내입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상술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 가운데 미국의 국가항공 우주법상 보험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상업우주발사법상 발사면허권자 및 이전받은 자의 책임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요건에 관한 규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상 우주활동 보험, 우주활동 수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상 인공위성 발사관련 보험계약 체결, 위탁된 발사에 관한 특별협정 등에 관한 규정, 우주기본법상 정부의 우주개발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 조치 등 강구, 우주활동 규제 및 우주개발에 관한 조약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제 정비,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하여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들을 우리나라 우주관련 법,

7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정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http://www.msip.go.kr>, 2013. 11. 26.

제도 및 정책의 정비 및 개선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⁷⁸⁾,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바, 우주개발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주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우주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 법률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우주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시 고려할 사항에 따른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이용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기술한 우리나라의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 및 우주활동에 부응하여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상 우주물체 발사국의 국제책임,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관련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위상을 정립하고 우주개발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우주정책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1978년 12월 14일 제정·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총 22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공군법무실, 『우주법 해설서』, 2008. 10.
- 김두환,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5. 6.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7. 12.
- 김종복, 『신우주법』,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김한택, 『국제항공우주법』, 지인북스, 2011.
- _____,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6.
- 문준조·김선이, 『현대 우주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및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 공청회 발표자료』, 2013. 7. 31.
- _____, 보도자료 “정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2013. 11. 26.
-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4판, 교보문고 Pubple, 2013.
- 신홍균, “우주개발진흥법의 적용과 실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5. 12.
- 외교통상부 조약국, 『우주조약 및 주요국 관련 법령』, 2009. 1.
- 이강빈,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0. 6.
- _____,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6.
- 이영진·김두환·조홍제, “우주법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 연구”, 외교통상부 용역과제, 2008. 9. 30.
- 이영진, “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9. 6.
- 이 준, “UN COPUOS 우주법 논의 동향 및 전망”, 『2013년도 제51회 항공우주정책·

- 법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12. 6.
- 조홍제·신동춘,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6.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법 및 비확산체제 관련 정책자료』, 2004. 5.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항공운송 및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 및 외국 입법례 분석과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007. 10.
- 홍순길·신홍균·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 황진영, “나로호 발사 성공과 향후 발전방향”, 『2013년도 제50회 국제항공우주정책·법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5. 3.
- 栗林忠男, 『解説 宇宙法資料集』, 慶應通信, 1995.
- Alma Mater Studiorum, *The Aviation & Space Journal*, Vol. XII No.1, January/March, 2013.
- Brunner, Christian and Soucek, Alexander, *Outer Space in Society, Politics and Law*, Springer-Verlag / Wien, 2011.
- Cheng, Bin, *Studi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Clarendon Press Oxford, 2004.
- Diederiks-Verschoor, I. H. Ph. and Kopal, V., *An Introduction to Space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 Doo Hwan Kim, *Essays for th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 Korea Studies Information Co., Ltd., 2008.
- Goh, Gerardine Meishan,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us Nijhoff Publishers, 2007.
- Haanapel, P.P.C., *The Law and Policy of Air Space and Outer Space-A Comparative Approach*,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asentuliyana, Nandasiri, *International Space Law and the United N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Hermida, Julian, *Legal Bases for a National Space Legisl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 Lyall, Francis and Lasen, Paul. B., *Space Law A Treatise*,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Sciverse Science Direct, *Space Policy*, Volume 29, Issue1, February 2013.

Viikari, Lotta, *The Environmental Element in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8.

Won Hwa Park, “Outer Space Activities and Observation of Related Laws of Korea”,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ol.24 No.2,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December 2009.

<http://www.kari.re.kr>(한국항공우주연구원)

<http://www.msip.go.kr>(미래창조과학부)

<http://www.oosa.unvienna.org>(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초 록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외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우주물체, 발사국, 우주활동, 국제책임, 우주정책, 우주조약, 구조협정, 책임협약, 등록협약, 달 협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Abstract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Lee, Kang-Bin**

Korea launched the science satellite by the first launch vehicle Naro-ho(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located at Oinarodo, Cohenggun Jellanamdo in August, 2009 and October, 2010.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aunch failed. At last, on January 30, 2013 the third launch of the launch vehicle Naro-ho has successfully launched and the Naro science satellite penetrated into the space orbit. Owing to the succeed of the launch of Naro-ho, Korea joined the space club by the eleventh tur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6, and Moon Agreement of 1979. Korea ratified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except the Moon Agreement. Such space-related treaties regulate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by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

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regula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or to its natural or judici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

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2A01018771).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angji University

to aircraft in flight.

The major nations of the world made national legislations to observe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and to promote the space development, and to regulate the space activi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 regulates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s of the major nations ar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and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Law on Space Activity of Russia, and the 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nd Space Basic Act of Japan.

In order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under space-related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ing as a strong space nation, Korea shall improve the space-related policy, laws and system as follows : Firstl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 space activity shall be maintained. For this matter, the legal arrangement and maintenance shall be made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space activity. Also the legal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for consideration when enacting th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 COPUOS.

Secondly,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ace damage shall be improved. For this matter,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the damage and the right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expense already paid for the damage in case of the joint launch and consigned launch shall be regulated newly.

Thirdly, the preservation policy for the space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 For this matter, the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the space development and use shall be established. Also the rule to mitigate the space debris shall be adopted.

Fourth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matt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bligation of the n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observed. Also through the international space-related cooperation, Korea shall secure the capacity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enter into the space advanced nation.

Key Words : Space object, Launching state, Space activity, International liability, Space policy,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Liability Convention, Registration Convention, Moon Agreement,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